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년 11월 7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 라. 상정일자: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5.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제3항제1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음.

○ 검토 결과

- 안 제8조에서는 현행 당연직 위원(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중 복지국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1명 더 추가해 위원회 구성 정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따르면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1/2이상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위 법률 및 지침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되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동법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구(區)는 2025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2025.10.22. 심의 완료)에서 동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의결하였으므로 적법한 입법 조치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41호
----------	-------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5.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제3항제1호)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사항
 - 2)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3) 인권영향평가·위원회 운영사항·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25. 10. 2. ~ 10. 2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u>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u></p> <p>2. (생략)</p> <p>④ (생략)</p> <p>제12조(준속기한) 통합기금의 준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u>생활환경국장</u>----- -----</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준속기한) ----- ----- <u>2030년 12월 31일</u>----- -----.</p>